

의안번호	제486호
의결 연월일	2016년 월 일 (제352회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15.7.24.)에 따라 '17.1.1.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를 적용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·운용함(안 제2조)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를 준용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·관리함(안 제20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를 준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함(안 제22조)
- 기금의 회계관직을 지정함(안 제23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4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한다) 발행수입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출연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
4.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
5.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

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상·하수도사업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

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9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·관리한다.

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)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 및 제11조제5호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」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.</p> <p>제3조(관리자의 지정) ① 기금은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에 따른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·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. 정부지원금 및 용자금 3. 출연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) 	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다.</p> <p>제3조 <삭 제></p> 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한다) 발행 수입 2. 기금의 운용수익금 3. 출연금(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
현행	개정안
<p>4. <u>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 라 한다) 발행수입</u></p> <p>5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</p> <p>6. <u>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, 출연하는 금액</u></p> <p>7. <u>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</u></p> <p>제15조(용자대상)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</p> <p>제17조(용자조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 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</u></p>	<p><u>를 포함한다)</u></p> <p>4. <u>정부지원금 및 용자금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</u></p> <p>제15조(용자대상) ① ----- -----</p> <p>1. <u>상·하수도사업,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</u></p> <p>제17조(용자조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 삭제 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0조(기금의 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 신설 ></p> <p>제21조(기금의 수입 및 지출) ①,② (생략)</p> <p>③ <u>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0조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9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도지사는 「충청북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·관리한다.</u></p> <p>제21조(기금의 수입 및 지출) ①,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 삭제 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기금운용계획)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회계개시 전에 충청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② < 신설 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채 발행계획 2. 공채 상환계획 3. 기금 용자계획 4. 용자금 회수계획 <p>제23조(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은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」에 의한다.</p>	<p>제22조(기금운용계획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3조(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)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지역개발기금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기금운영 심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<u>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4조(기금운영 심의) ----- ----- ----- 「<u>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9조 및 제11조제5호에 따라 <u>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[시행일 : 2017.1.1.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시행일 : 2017.1.1.]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

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9조(회전기금)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.

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.

□ 지방회계법

제39조(세계현금의 전용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(歲計現金)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(轉用)할 수 있으며,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(辨濟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. [시행일 : 2016.11.30.]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<생략>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“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

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7조(예탁의무)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, 예산 및 결산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2. 융자대상사업의 선정,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
5.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